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47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㈜아이에이치큐

2. 조치내용

□ **(금감원 원안)** ㈜아이에이치큐 증권발행제한 1월

□ **(원안의결)** ㈜아이에이치큐 증권발행제한 1월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회사는 ◎◎◎◎㈜를 인수인으로 하여 제6회차(500억원)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2021.6.14.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,

- 동 보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9호, 제164조 제2항 제2호, 제429조 제3항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, 제175조 제1호